# 갑오개혁 이전 조선의 황제국 용어 사용

민 회 수 *

1. 머 리 말
2. 전근대~개항 초기 한국의 君主 관련 호칭과 용어
3. 열강과의 조약 체결과 君主 관련 호칭·용어의 변화
4. '大君主陛下' 호칭의 등장과 황제국 용어의 사용 확대
5. 맺 음 말

**초록**: 秦始皇이 처음 '皇帝' 호칭을 사용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事大秩序는 皇帝國과 諸侯國 사이에 '황제'와 '國王'이라는 호칭 이외에도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朕', '陛下', '詔', '勅' 등의 용어를 두어, 격을 엄격하게 구별지어 놓았다. 고려시대에는 외부적으로 제후국체제를 따르면서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는 '外王內帝' 체제가 성립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도 제후국체제의 격식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 조선의 국왕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국왕'으로 호칭되었다.

개항 이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국왕에 대한 호칭으로 기존에는 호칭이 아니라 일반명사로 사용되던 '君主'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영국이 1842년에 청과 체결한 南京條約에서 황제-제후 관계와 무관한 명칭을 찾으면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후 1883년 영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군주' 앞에 '大'자가 추가되어 '大君主'라는 호칭이 탄생하였다. 이는 영국이 과거 중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격을 맞추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보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호칭이었다. 萬國公法 체제 하의 국가 간 조약은 1대 1이 원칙이므로, 영국과 격을 맞추기 위해 조선의 군주 또한 '대군주'로 표기되었고, 이후로 영국 이외의 여러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국왕 고종은 '대군주'로 지칭되어 이 명칭이 외교적으로 조선 국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서구의 군주국들이 중국과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사대질서하에서라면 황제국만 사용 가능한 '짐', '조', '칙' 등의 용어들을 이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들 또한 쓰게 되었고, 역시 조선과의 조약 협상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조선도 격을 맞추기 위해 '칙', '勅諭' 등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다만 처음에는 '짐'이나 '欽差' 등의 표현은 사용을 삼갔는데,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사과 사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들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888년부터 '대군주' 뒤에 황제국 체제의 호칭인 '폐하'를 붙여 외국공관들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의 내정간섭이 점증하면서 조선이 그 극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常駐使節 파견과 더불어 외국의 인정에 기반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청에게 비밀로 하며 시행된 '소극적인 반청자주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먼저 미국・일본 등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다가 1889년부터 그 대상이 대부분의 외국 공관에로 확장된 이 '大君主陛下'라는 표현은 외국 공관들과의 왕복 문서에서는 일상화되었고 海關에 대해서도 쓰였으며, 마침내 1893년에는 관찬 연대기류 사료에 등장하였다. 아울러 '짐'이나 '칙유' 등의 여타 황제국 용어 및 표현들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되어갔다. 그러던 중 1894년 이후 청・일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라 청과의 관계 단절이 화두가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이 호칭이 전면으로 드러났고, 1895년부터 비단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공식적인 호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핵심어** : 君主, 大君主, 陛下, 大君主陛下, 勅諭, 皇帝國, 反淸自主

# 1. 머 리 말

이른바 '事大秩序'로 규정되는 동아시아의 전근대 국제관계는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萬國公法 체제'로 규정되는 서양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조공-책봉체제[1]라는 형식상의 외피 하에 階序的 속성을 지니는 사대질서와는 달리 그 구성원의 위상이 상호 동등함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2] 이에 따라 사대질서하에서 皇帝國인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諸侯

1) 페어뱅크(J.K.Fairbank)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이른바 '조공시스템'론에 대해서는 근래 비판적인 논의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정동훈, 2019「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專有)」,『역사와 현실』113, 343-350면 참조).

2)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만국공법체제에서도 독립국이 아닌 '屬國・半主之國'이라는 국가 위상이 존재하였다(유바다, 2017「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2-138면). 그러나 이는 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國의 위상을 가지던 조선은 만국공법체제의 형식적 특징인 '條約(treaty)'의 체결을 통해 서구 열강 및 일본 등과 상호 동등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통적인 기존 관계가 조약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관계와 착종되는 현상, 즉 '兩截體制'라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는 淸이 1882년 壬午軍亂을 계기로 조선에 대해 전근대에는 유례가 없던 내정간섭을 강화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국 세력이 조선으로부터 축출되고, 이후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국왕 고종의 황제즉위를 거쳐 양국이 '한・청통상조약(1899)'을 체결하여 만국공법적인 동등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종식되었다.

이상과 같은 개항기 조선의 국제관계상 변화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배출되었다. 즉 조・일수호조규(1876)를 필두로 미국・영국・독일(1882), 러시아(1884), 프랑스(1886) 등 열강과의 수호조약 체결, 그리고 임오군란을 계기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청의 내정간섭, 특히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조선이 취한 조・러밀약, 駐美全權公使 朴定陽 파견 등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국내외 사료를 활용한 방대한 업적들이 축적되어 왔다.[3)]

그런데 당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국제질서 변환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 사건들에 대한 탐구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즉 국가원수에 대한 호칭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고유명사들의 명칭 등에 있어 국가 간 불평등한 상호관계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전근대 사대질서에서 그와는 반대인 근대 만국공법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조선에게는 중국의 제후국에서 중국과 동등한 황제국으로의 위상 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대한제국의 황제국 체제 그 자

---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선이 서구 열강들과 체결한 관계는 당연히 이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였다.

3) 상기 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일이 나열・소개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체를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 거기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몇몇 단편적인 개별 사건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우선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간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의 稱帝 논의를 언급한 바 있다.[4] 그리고 개항 이후 조선의 對日使節 파견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 이후인 1885년 초에 일본에 파견된 徐相雨 사절과 관련된 의례 중 황제국 체제 성격의 요소와 관계된 내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발견된다.[5]

일본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군주에 대한 칭호 변화를 검토한 연구에서 조선의 경우가 일부 언급된 바 있으며,[6] 특히 대한제국 성립 전후 국가 위상과 관련된 변화를 살핀 연구에서 조선의 대외의례가 1888년을 기점으로 하여 황제국의 것으로 변경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7] 그러나 보다 긴 호흡으로 전근대를 포함하여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이의 변화 과정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대질서하에서의 황제국과 제후국의 격식 차이에 대해 개관하고, 뒤이어 주로 국왕에 대한 호칭인 '大君主', '大君主陛下'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개항 이후 조선이 사용한 왕실이나 국가 관련 호칭, 어휘 등에서 황제국 체제의 표현이 등장하는 과정을 1894년 갑오개혁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들에 대한 보충 또한 이루어질

---

4) 민회수, 2009「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奎章閣』35 93면에서 '大君主陛下' 호칭이 1892년에 등장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이 호칭이 처음 출현한 것은 그보다 이전 시점이다.

5) 이효정, 2019「19세기말 조선의 근대 외교질서 수용의 한 양상 -대일(對日) 사절단의 명칭과 사행원역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학논집』74; 박한민, 2019「조선의 對日사절 파견과 대응양상의 변화(1876~1885) -흠차대신 파견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77.

6) 岡本隆司 編, 2014『宗主權の世界史: 東西アジアの近代と翻譯概念』, 名古屋大學出版會(제2부 제3장 補論;「東西の君主号と秩序觀念」).

7) 月脚達彦, 1999「大韓帝國成立前後の對外的態度」,『東洋文化研究』1(2009,『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近代朝鮮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에 재수록. 번역본: 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2014『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열린책들).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복잡다단한 대외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전근대~개항 초기 한국의 君主 관련 호칭과 용어

주지하듯이 동아시아 사대질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제도는 秦의 始皇帝에 의해 창안되었다. BC 221년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시황제가 천하통일의 功業에 걸맞은 위호를 제정하라고 내린 지시에 호응하여 신하들은 '太皇'이라는 칭호를 올렸고, 시황제는 여기서 '太'자를 빼고 뒤에 고대 군주의 칭호인 '帝'를 덧붙여 '皇帝'라는 칭호를 제정하였다.[8] 비단 호칭뿐 아니라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어들도 제정되었다. 즉 황제가 자신을 칭하는 호칭인 '朕', 타인이 황제를 부를 때 붙이는 존칭인 '陛下', 황제가 내리는 문서의 형식인 '勅', '詔', '制' 등이 그것이다. 이와 대비되어 군주를 지칭하는 기존의 '王' 칭호는 서열상 황제의 신하로 규정되면서 격식 및 그에 따른 용어 역시 한 단계 아래로 정해졌다. 곧 '짐'에 해당되는 自稱으로 '孤' 또는 '寡人'을, '폐하'에 해당되는 호칭으로는 '殿下'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의 신하, 곧 諸侯가 통치하는 국가인 '諸侯國'이 황제가 통치하는 '皇帝國'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외교시스템, 곧 '事大秩序'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9] 이렇게 중국의 최고 통치자를 '황제'로 칭하는 것은 1912년 淸朝의 마지막 황제 宣統帝가 퇴위하기까지 2천여 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다.

한국의 경우 예외가 없진 않았지만, 대체로 제후국의 자격으로 중국과 조공-책

8) 編輯部 編譯, 1991『東洋史의 基礎知識』, 신서원, 49면.

9) 이러한 호칭과 명칭 문제 이외에도 사대질서하 황제국과 제후국의 격식 차이는 독자적인 年號 사용이나 冊曆의 제작, 宗廟의 廟制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지만, 이는 본고에서의 중심 논의 사항이 아니기에 생략한다.

봉관계를 맺어서 사대질서 시스템에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제후국의 격식을 따르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체제의 그것을 원용하는 이른바 '外王內帝'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발해와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에 해당되는데,[10] 이하 『高麗史』 '凡例'의 내용은 이렇게 고려가 내부적으로 황제국의 격식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1. 世家: 『史記』를 상고하건대 天子는 紀라 하고 諸侯는 세가라 하였으니, 이제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王紀를 세가라고 함으로써 명분을 바르게 한다. 그 書法은 두 『漢書』(『前漢書』·『後漢書』)와 『元史』를 따라서 事實과 言辭를 모두 적는다. 무릇 '宗'을 칭하고 陛下·太后·太子·節日·制·詔라 일컫는 따위는 비록 참람되지만, 지금은 당시에 일컫던 바에 따라 적음으로써 사실을 보존한다. …… (후략)[11]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국왕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高麗國王'으로 칭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격식인 '폐하'로 호칭했으며, 마찬가지로 왕의 모후 역시 제후국체제의 '大妃' 대신에 '태후'라는, 그리고 왕위 계승권자 역시 '世子' 대신에 태자라는 황제국체제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왕조는 이러한 호칭들에 대해 '참람된' 행위로 평가하고 황제와 제후의 명분을 바르게 하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외왕내제의 격식은 원 간섭기에 원의 압력을 받아 무너진 이후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명과 사대관계를 맺은 조선은 내·외적으로 모두 제후국 격식을 따르게 되었다.[12] 따라서

---

10)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194면. 그런데 근래 고려의 외왕내제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베트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철저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외왕'의 측면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崔鍾奭, 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震檀學報』 125).

11) 『高麗史』 권1, 「纂修高麗史凡例」 "一 世家 按史記 天子曰紀 諸侯曰世家 今纂高麗史 王紀爲世家 以正名分 其書法 準兩漢書及元史 事實與言辭 皆書之 凡稱宗 稱陛下太后太子節日制詔之類 雖涉僭踰 今從當時所稱書之 以存其實 ……(後略)"

12) 유일하게 제후국의 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국왕의 廟號(祖·宗)로, 이 역시 원래는 황제만 쓸 수 있으나 고려에서 사용하던 관성에 따라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成宗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용하지 말고 諡號로 수정

국왕의 대외적인 호칭 또한 '조선국왕'이 표준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대관계를 맺은 명·청 및 1대 1의 동등한 交隣關係를 맺은 일본과의 관계에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13)]

조선의 외교적 격식과 위상 문제는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 일본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明治維新을 단행한 일본측에서 對馬島를 통해 조선에 왕정복고를 알리는 書契를 보냈는데, 이 서계는 그간 통용되어 온 격식과 어긋남은 물론, '皇上', '奉勅' 등 당시 사대질서하의 조선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여 접수 자체가 거부된 것이다.[14)] 근대 이전 일본의 天皇은 실권이 없음은 물론 그 존재조차 정치적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조선과의 외교 교섭시에는 幕府의 將軍이 전면에 나섰다. 그에 대해 조선·일본 양측에서 자칭·타칭으로 '일본국왕'이라고 호칭함으로서 조선국왕과 형식상 대등한 관계가 되어 별 충돌이 없었지만, 정치적인 은둔자였던 천황이 전면에 등장하여 '皇'·'勅' 등 황제국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계속적인 서계 접수의 거부와 전달 시도의 와중에 일본에서는 征韓論까지 발생하였고, 결국 일본측에서 운요호(雲揚號) 사건을 조작한 것을 계기로 江華府에서 일본 전권대표 구로다(黑田淸隆)·이노우에(井上馨)와 조선측 접견대표 申櫶·尹滋承 간의 협상을 거쳐 1876년 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과정에서 양국 군주의 호칭

---

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에 따른 각종 문헌·기록들의 수정 등 수반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대신들의 반대에 철회하기도 하였다(『成宗實錄』 권200, 18년 2월 8·10·21일).

13) 명·청에서의 호칭의 경우 『吏文』과 『同文彙考』 등에 수록된 咨文, 表文 등을 보면 '조선국왕'이 명기되어 있으며, 조선국왕이 발신자이고 중국 황제가 수신자일 경우 '朝鮮國王臣 [姓(李)+諱]'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조선국왕'이 정식 호칭이되, 경칭인 '殿下'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이는 일본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하' 호칭이 누락될 경우 조선측에서 違式으로 문제를 삼기도 하였다(이훈, 2009 「외교문서로 본 근세 한일간의 상호인식 -일본측 서계(書契)의 위식(違式)사례를 중심으로」, 『일본학』 28, 112-113면).

14) 김흥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54-177면.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일본측에서 제시한 원안을 보면, 前文의 시작 부분에 '大日本國 天皇陛下'와 '朝鮮國王 殿下'로 호칭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천황', '왕'이나 '폐하', '전하'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휘들은 빼고, 조선의 국명 앞에도 '大'자를 삽입해 '대조선국과 대일본국'으로 수정하자고 제의하였고 일본도 이에 동의하였다.[15] 이에 따라 조·일수호조규에서는 양국간 서계 접수를 둘러싸고 험악한 마찰을 야기하기까지 했던 민감한 황제국·제후국 관련 용어들이 삽입되지 않게 되었고, 군주에 대한 호칭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 3. 열강과의 조약 체결과 君主 관련 호칭·용어의 변화

### 1) '君主' 호칭의 등장

새로운 만국공법체제하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조선 국왕이 처음으로 명기된 것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였다. 즉 그 前文에,

> 大朝鮮國과 大아메리카合衆國은 우호관계를 두텁게 하여 피차 人民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大朝鮮國 君主**는 특별히 全權大官 申櫶·全權副官 金弘集을 파견하고, 大美國 대통령(伯理璽天德; president)은 특별히 全權大臣 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R.W.Shufeldt)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위임 신임장을 상호 검열하고 모두 타당하기에 條款을 작성하여 이하 열거한다. …… (후략)[16]

라고 하여 국왕 고종이 '대조선국 군주'로, 미국 대통령 아서(C.A.Arthur)가 '대미국 伯理璽天德'으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표기는 조약의 최종 체결 이전의 협상 과정에서도 대체로 비슷하였다. 즉 미 대통령이 조선에 보낸 國書 및 그에 대한 회

---

15) 김흥수, 위의 책, 450면.

16) 『高宗實錄』 권19, 19년 4월 6일, "大朝鮮國與大亞美理駕合衆國 切欲敦崇和好 惠顧彼此人民 是以**大朝鮮國君主** 特派(全權大官申櫶·全權副官金宏集) 大美國伯理璽天德 特派全權大臣水師總兵薛斐爾 各將所奉全權字據 互相較閱 俱屬妥善 訂立條款 臚列於左 …… (後略)"

답서에서 고종은 '대조선국 군주'로 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17] 또한 '君'을 생략하고 그냥 '(大)朝鮮國主'로 표기된 경우도 발견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보낸 슈펠트의 전권위임장[18] 및 조선이 청국의 屬邦임을 밝히는 국왕 명의의 조회문(屬邦照會)이 이에 해당된다.[19]

그런데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조선의 국왕은 전통적으로 외교문서에 '國王'으로 표기되었으며, '군주'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임금을 뜻하는 단어인 '군주'라는 용어는 전근대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던 것인가?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그 실제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A. (전략) … 그러나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대 **군주**가 비록 모두 功德이 백성에게 있지 않았더라도 또한 모두 일국의 인민이 함께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 (후략)[20]

B. (전략) … 신이 아뢴 것은 대개 **군주**의 陽剛한 덕과 국사를 도모하기에 앞서 스스로 다스리는 도리를 전편의 大旨로 삼았습니다. … (후략)[21]

위의 예문들에서 사용된 '군주'는 모두 특정한 실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임금을 뜻하고 있다.[22] 즉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군주'는 임금을 뜻하는 일반명사일 뿐 호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군

17)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이하 '亞硏'으로 약칭) 編, 1967 『舊韓國外交文書』 10(美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9면, #10-附2・10면, #11-附1. 이하 참고문헌 내 구한국외교문서 시리즈는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재인용시 '『美案』 1', '『英案』 1'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18) 『美案』 1, 9면, #10-附1.

19) 『美案』 1, 10면, #11-附2. 그런데 이는 조약 협상 당시 개입했던 청국측 대표가 마련한 초안에 해당되고, 실제 조약 체결 후 발송된 조회에는 '군주'로 표기되었다[『國照會謄錄』(古5710-11) 참조].

20) 『世祖實錄』 권3, 2년 3월 28일, "(前略) … 然臣竊惟 歷代**君主** 雖未能皆有功德於斯民 亦皆一國人民所共主也 … (後略)"

21) 『孝宗實錄』 권9, 3년 10월 22일, "(前略) … 臣之所陳 蓋以爲**君主**陽剛之德 謀國先自治之道 爲一篇大旨 … (後略)"

22) 조선시대의 경우 '군주' 대신에 '人主'라는 표현이 더 많이 확인된다.

주'가 호칭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아편전쟁의 결과 1842년에 체결된 南京條約으로, 시작 부분에 양국 군주의 칭호를 열거하는 대목에서 중국은 '大淸 大皇帝'로, 영국은 '大英 君主'로 표기되어 있다.[23] 영국은 동아시아 세계질서에서 'king'이 '王'을, 'emperor'가 '皇帝'를 뜻하며, 전통적 사대질서에서 왕과 황제가 차등적인 서열관계를 이루는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군주는 'king/queen'의 칭호를 사용하였기에 동아시아 용어로는 '왕'이 되지만, 그렇게 표기할 경우 청조 황제보다 아래의 서열에 위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황제국/제후국 서열과 무관한 호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호칭이 아닌 일반명사로 사용된 '군주'를 채택한 것이다.[24]

이후 동아시아와 조약을 체결하는 서구 제국들에 있어서 '황제' 칭호를 갖지 않은 국왕들에 대한 호칭은 '군주'로 정착되게 되었고[25], 이것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황제국·제후국 체제의 격식 차이가 만국공법질서의 도입과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여러 복잡한 양상과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조약 체결 상대국의 政體가 君主政이 아닌 점 또한 조·미조약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게 만든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大君主' 호칭의 등장과 황제국 용어의 도입

'군주'의 앞에 '大'자가 추가되어 조선의 국왕에 대한 호칭이 '大君主'로 공식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1883년에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을 보면,

> 大朝鮮國 大君主와 大英國 大君主 겸 五印度 大后帝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를 議訂한다.……(후략)[26]

---

23) 『咸豊條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659-11) 제8책, 75면.

24) 岡本隆司 編, 앞의 책, 138면.

25) 위의 책, 138면.

26) 『高宗實錄』 권20, 20년 10월 27일, "大朝鮮國大君主 大英國大君主兼膺五印度大后帝 切願

라고 하여 '군주' 앞에 '大'자가 첨입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알려지다시피 조·영 조약은 1차로 1882년에 조·미조약과 비슷한 시기에 타결되었지만, 관세율 문제로 본국에서 비준이 거부되면서 재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차로 타결된 원안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군주'로 되어 있다.[27] 조약 협상을 위한 과정에서 역시 이 '대군주' 호칭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 즉 1차 협상 당시에 초안으로 작성되었던 속방조회에서부터 고종은 '대군주'로 표기되고 있었으며,[28] 2차 협상으로 들어간 뒤에 발부된 조선 측 대표 閔泳穆과 영국측 대표 파크스(巴夏禮: H.S.Parkes)의 전권위임장[29] 및 이듬해의 비준 관련 문서[30] 등에서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더불어 동일하게 호칭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군주' 앞에 '대'자가 붙은 '대군주' 호칭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대군주' 호칭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군주폐하' 호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895년에 崔益鉉이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대군주'란 세 글자는 禮에 근거가 없고 옛적에도 듣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31] 그렇다면 이 호칭의 사용은 조약 체결 당사자인 양국 중 조선 측이 아니라 상대국인 영국 측의 주장 혹은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당시 독일 역시 거의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과 조약의 협상·재협상 및 체결이 이루어졌고, '대군주' 호칭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1차 협상시의 관련 공문들[32] 및 협상 과정에서 생산된 전권위임장과 비준서,[33] 그리고 조약의 원문[34] 등에 동일하게 나타

---

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 (後略)"

27)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2012『近代韓國外交文書 제5권;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778면.

28) 亞硏 編, 1968『舊韓國外交文書』13(英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1면, #1.

29)『英案』1, 10면, #18·14면 #27.

30)『英案』1, 15면, #28·19면 #35·21면 #38-#39 등 참조.

31)『勉菴集』 권4,「疏」,〈請討逆復衣制疏(乙未六月二十六日)〉, "(前略) …… 況大君主三字於禮無據 於古未聞者乎 …… (後略)"

32) 亞硏 編, 1966『舊韓國外交文書』15(德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1면, #1-#2.

33)『德案』1, 30-32면, #46-#47.

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러 정황상 영국 측이 조약 협상을 주도했고 독일은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으며, 따라서 이 호칭의 등장 또한 영국 측의 견해가 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영국이 왜 '대군주' 호칭을 자국 군주의 한자어 호칭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당시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 현재로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영국이 조선에 앞서 중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자국 군주의 호칭 표기가 변화한 과정을 보고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전술하였다시피 1842년 南京條約에서 중국은 '大皇帝', 영국은 '君主'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표기는 1858년에 제2차 아편전쟁(애로우 전쟁)의 결과 체결된 天津條約에 가면 둘 다 '대'자를 삭제하고 '대청 황제'와 '대영 군주'로 바뀌었다.[35] 다시 이로부터 2년 뒤인 1860년에 天津條約을 보충·수정하여 체결된 北京條約을 보면, 이번에는 둘 다 '대'자가 삽입되어 '대황제'와 '대군주'로 표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36]

이로부터 추정해볼 수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大'자와 관련된 문제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영국측에서 이후 청국 황제가 '大'황제로 표기되어 얼핏 호칭만 보면 자신들의 위상이 그보다 아래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의 시정을 고려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 한문본 작성에 대해 영국 측이 일정 부분 의견을 내서 처음에는 양국 군주의 칭호에서 모두 '대'자를 뺐다가, 이후 둘 다 '대'자를 붙이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37] 아마도 이렇게 해서 영국에

34) 『高宗實錄』 권20, 20년 10월 27일.

35) 『咸豊條約』 제3책, 11면.

36) 위의 책 제5책, 45면.

37)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 '군주'에서 '대군주'로의 변화는 그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고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岡本隆司 編, 앞의 책, 142면). 『咸豊條約』(古659-11)을 보면 19세기 후반 청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의 원문 및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영국간 조약에서 양국 군주의 명칭 관련 논의에 대한 내용 역시 현재로서는 추론만 가능할 뿐이다. 다만 南京條約 체결의 협상 과정에서 擡寫(존칭을 위하여 행을 올려 쓰는 것) 문제와 관련하여 청국 황제와 자국 국왕 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꼼꼼

서 자국 국왕의 한자문화권에서의 칭호는 '대군주'로 표기하도록 방침을 정했을 것이고, 이것이 조선에서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 평등한 자격으로 체결되는 수호통상조약에서 상대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선 국왕 고종의 호칭 역시 '대군주'로 표기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선 국왕의 대외적 호칭 표기는 '대군주'가 되었고, '大君主' 및 '大朝鮮國 大君主'가 새겨진 인장의 주조 또한 이루어졌다.[38] 이는 당장 조약 체결 후 비준서 교환 과정이었던 조·미조약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약 본문과는 달리 비준 관련 문서들에는 모두 고종이 '대군주'로 기재되었다.[39] 일본의 경우 '大王' 등으로 호칭하다가,[40]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제물포 조약과 관련하여 일본 공사 竹添進一郎이 고종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대군주' 호칭을 쓰기 시작한 뒤[41] 계속해서 이를 유지했으며, 청을 제외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타국 모두 마찬가지로 이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외교적으로 범용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략 1883년 즈음 이후부터 고종은 외교문서에서 자타 공히 '대군주'로 호칭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42] 이 '대군주' 표기는 이후 『漢城週報』 등 신문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조선이 열강과의 문서 교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외교적 격식은 이 '대군주' 호칭만이 아니었다.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서양의 군주국들은 원래 동아시아의 전근대에서는 황제국만이 사용 가능한 '朕'이나 '詔', '勅' 등의 표현을 외교문서에서 상용하다시피 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들 국가가 조선에 앞서 황제국인 중국

---

했던 영국 측이(佐佐木正哉 編, 1964, 『鴉片戰爭の硏究: 資料篇』, 近代中國硏究委員會, 190면) 이 '대'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째서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38) 『高宗實錄』 권19, 19년 5월 23일·7월 1일.

39) 『美案』 1, 16면, #20-#21·17-19면, #24·19면, #26 등 참조.

40) 亞硏 編, 1965, 『舊韓國外交文書』 1(日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54면, #70.

41) 『日案』 1, 158-159면, #320. 다만 그 이전인 1884년 5월 3일에 督辦交涉通商事務 金炳始가 郵征總局을 설립하고 總辦으로 洪英植을 임명한다고 일본 署理公使에게 통보한 문서 내에서 '대군주'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지는 최소한 이 시점부터는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日案』 1, 120면, #235).

42) 일본의 경우 1883년에는 조선과 왕복한 외교문서에서 고종을 지칭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과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영국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 파크스에게 내린 전권위임장의 한문본을 보면 '짐'과 '조', '詔勅'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며,[43] 이에 대응하여 고종이 민영목에게 내린 전권위임장을 보면 '勅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44] 즉 '조'·'칙' 등의 황제국 표현 역시 만국공법체제하 서구 열강들과 1:1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과 격식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大君主가 勅諭하기를'이라는 표현은 점차 각국 공사관들과 왕복하는 외교문서에 일상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황제국체제와 관련한 또 다른 표현인 '欽差'는 황제가 파견하는 사신에 붙이는 수식어이다. 그런데 이 역시 영국,[45] 독일[46] 등 군주국들은 물론 공화국인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47] 조선의 경우 상대국과의 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칙'의 표현은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 '흠차'와 '짐'의 표현은 1882~1883년 단계에서는 사용을 삼가고 있다.[48] 아마도 당시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내정간섭을 가하고 있던 청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현들은 1885년에 갑신정변의 일본인 피해에 대한 사과 명목으로 서상우와 묄렌도르프(P.G.Möllendorf; 穆隣德)를 전권사절로 파견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49]

결국 기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상이한 관계를 서구 열강과 체결하는 과정에

---

43) 『英案』 1, 8면, #14-附.

44) 『英案』 1, 10면, #18.

45) 파크스를 '大英欽差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으로 표기하고 있다(『英案』 1, 7-8면, #14 등).

46) 『德案』 1, 2면, #4 등.

47) 미국의 경우 주로 '欽命'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흠'이 황제와 관련되는 표현이므로 크게 보아 '흠차'와 유사한 사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美案』 1, 8면, #10 등).

48) 독일과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일 측에서 조선 측 전권대표들에 대해 '大朝鮮國欽命全權'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었다(『德案』 1, 4면, #6-漢譯). 그러나 조선 측에서 스스로 '흠차'·'흠명'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는 미국·영국·독일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유일한 사용의 예는 민영익을 미국에 報聘使로 파견하면서 내린 諭書에서였다(박한민, 앞의 논문, 84면).

49) 박한민, 앞의 논문, 84-85면.

서 국왕의 호칭으로 '대군주'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아울러 사대질서하에서 제후국인 조선에게는 금기였던 표현들이 조약 체결 상대국과 격을 맞춘다는 명분하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은 여전히 청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의식해서였겠지만 상기 '짐'이나 '칙', '유' 및 '흠차'·'흠명', 그리고 '대군주'라는 표현조차도 청국 및 조선 주재 청국 공관과의 왕복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4. '大君主陛下' 호칭의 등장과 황제국 용어의 사용 확대

한국의 문헌에서 '대군주폐하'라는 호칭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한 朴泳孝가 고종에게 보낸 '내정개혁에 관한 建白書'의 첫 부분에서다.[50]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51] 다만 이 호칭의 탄생이 개화파의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 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2] 공식적으로 이 표현을 조선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1888년 4월 11일이다. 즉 이날 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式이 고종의 加上尊號 축하를 위한 경축연에 미국 공사관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낸 초대장에 '대군주폐하'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53] 며칠 뒤인 17일에 같은 내용의 문서가 일본공사관에 발송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54] 처음 나오는 해당

50) 『日本外交文書』 21, 문서번호 106, 292면.

51) 『일본외교문서』에는 이 건백서의 작성 시기가 1888년 2월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의 조선 정부 및 고종에의 전달 시점, 아니 아예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52) 그런데 같은 개화파라 하더라도 1889년에 탈고한 兪吉濬의 『西遊見聞』에서는 이러한 호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가 책의 서문에서 고종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은 '聖上'으로, 아마도 대중을 상대로 한 출판을 염두에 둔 공식성을 가진 문헌에서 청의 간섭하에 '대군주폐하' 용어를 쓰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53) 『美案』 1, 350면, #513.

표현에 대해 미국 측은 회신에서 '폐하'를 뺀 '대군주'를 사용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55] 일본 측은 해당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회신하였다.[56]

전술한 것처럼 '대군주'라는 호칭도 동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긴 했으나 애초에 '군주'라는 용어가 사대질서 내 황제국과 제후국의 위상 차이와 관련이 있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나 '폐하'라는 호칭은 명백히 황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대군주'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비록 '짐'이나 '칙', '유', '흠차' 등과 같은 여타 황제국 표현들이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약 체결 상대국과 격식을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서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폐하'라는 호칭은 이와는 다르다. 상대국이 이 '폐하' 호칭을 쓰는 경우는 모두 '황제(emperor)'의 칭호를 갖고 있는 경우였고(독일, 러시아 등), 영국 여왕의 경우 '대군주'가 기본 호칭이긴 했지만 '인도의 大后帝'라는 다른 수식이 있었다. 아직 청과는 사대관계가 엄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후국의 격식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던 조선 국왕 고종의 '폐하' 호칭은 분명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호칭의 갑작스러운 사용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국내외적 정치·외교적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그 배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청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모순적인 상황, 곧 '양절체제'의 극복을 위해 1885년의 한·러밀약 체결 시도[57]에 이어 1887년에 시도한 주미전권공사 파견과 그 맥락이 연결되는 것임은 분명하다.[58]

다만 전권공사 파견과 이 용어의 사용 사이에 있어서 정확한 상관관계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이 용어의 사용이 전권공사의 파견 실패 이후 정책화된 것인지는 양자 시점의 선후관계 등을 정밀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권공사로 파견된 박정양이 이른바 '另約 3端'을 지키지 않아서 청

54) 『日案』 1, 515면, #1121.

55) 『美案』 1, 351-352면, #515.

56) 『日案』 1, 515면, #1122.

57) 제1차 한·러밀약에 대해서는 具仙姬, 1996 「갑신정변 직후 反淸政策과 청의 袁世凱 파견」, 『史學硏究』 51 참조.

58) 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7면.

측의 항의를 받고, 결국 청의 압력에 못 이겨 조선 정부에서 박정양의 소환을 결정한 시점은 1888년 11월 20일(음력 10월 9일)이다.[59] 즉 이 용어의 사용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전권공사 파견의 실패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결과 전자의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1888년 4월에 처음 쓰였다고 해서 해당 시점에 이 용어의 사용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외교문서에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이 호칭이 사용된 4월 이전에 고종이 언급되는 외교문서가 기록에 나오는 것은 몇 개월의 시차가 있다. 미국 측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경우 4월 11일의 '대군주폐하' 표현 등장 문서 이전에 '대군주'가 언급된 것으로 가장 늦은 것은 이전 해인 1887년 12월 7일에 조병식이 미 해군 중위 메이슨(T.B.Mason; 米孫)에게 보낸 문서로 확인된다.[60]

따라서 '대군주폐하' 용어 사용의 정책적 결정 시점은 최대 1887년 12월까지 소급이 가능하며, 이 시점은 박정양이 서울을 출발한 뒤 아직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61] 따라서 호칭 사용의 정책은 시기상으로 볼 때 전권공사 파견 정책과 거의 동시에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정황상 이는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권공사의 파견과 '대군주폐하' 호칭의 사용은 그 사고의 논리 구조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들로부터 청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이 전권공사 파견이라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들로부터 '폐하'로 상징되는 황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이 호칭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의 내정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청과의 직접 대결 대신 만국공법체제하 1:1 조약을 체결한 외국들의 인정을 기반으로 삼는 전략으로서, 다만 그 무대가 해외냐 국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59) 한철호, 2018「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파견」,『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365면.

60)『美案』1, 334면, #485.

61) 박정양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1888년 1월 1일이었다(한철호, 앞의 논문, 355-356면).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군주폐하' 호칭의 사용은 청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여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반청자주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권공사 파견과 더불어 청에 대한 '면종복배'의 수단으로서 시작된[62] '대군주폐하' 용어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일단 1888년의 최초 사용 시 해당 용어의 사용 대상국은 미국·일본 단 2개국에 불과했다. 프랑스와 독일에는 아예 해당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영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문서에서는 '폐하' 표현을 뺀 '대군주'로 표기했다.[63] 즉 해당 용어를 국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 청과 대립하는 입장이었던 점과 전권사절 파견의 대상국이 미국이었음을 감안하여 일단 이들 두 국가를 대상으로 일종의 '시험 사용'을 해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64]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측은 일단 신중하게 반응한 반면 일본 측이 보다 잘 호응해주었으며, 이에 이듬해인 1889년 2월 24일에 조병직이 일본 代理公使 近藤眞鋤에게 당시 三南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관계로 부산·인천·원산의 三港으로 수입하는 쌀에 대해 특별히 면세하도록 하는 건을 통보하기 위해 보낸 문서에서 해당 표현을 다시 한 번 사용하였다.[65]

이 호칭은 이틀 뒤 일본 측의 회신에서 인용의 형식으로 다시 나온 이후로[66]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1889년 8월 17~18일에 고종의 생일 축하연을 홍보하는 외교문서에서 또다시 등장하였다. 이번에는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미국,[67] 영국,[68] 일본,[69] 독일,[70] 프랑스[71] 등 주한 외국공관 대부분에 전달되었고, 이번에

62) 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7면.

63) 『英案』 1, 270면, #491; 亞硏 編, 1969, 『舊韓國外交文書』 17(俄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69면, #131. 다만 러시아의 경우 초청장 원본은 없으며, 초청장에 대한 러시아 측의 회신 문서 내에 인용된 내용만 남아있기에 확실하지는 않다.

64) 특히 두 나라 중에서 미국 측에 초청장을 먼저 보낸 것은, 아무래도 이 용어 사용의 정책이 미국에의 전권사절 파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측면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다.

65) 『日案』 1, 625면, #1356.

66) 『日案』 1, 625면, #1357.

67) 『美案』 1, 453면, #672.

68) 『英案』 1, 340-341면, #630.

는 모두 '대군주폐하'라는 호칭을 기재하였다. 다만 이번에도 러시아는 예외였는데, 이는 아마도 이전의 조·러밀약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중함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72]

이상의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대군주폐하' 용어 사용에 관한 조선의 정책 기조는 신중함에 기반한 점층법적 확장이다. 즉 사안의 성격상 신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들에 먼저 호칭을 사용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73] 이러한 조선 측의 '대군주폐하' 호칭 사용에 대해 상대국들은 대체로 이를 인정하여 같은 호칭을 회신에 사용하였다.[74] 이후 고종의 생일 축하연에 대한 초청장의 형식은 神貞大王大妃 趙氏의 사망으로 인해 연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189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되었다.[75] 그리하여 점차 이 호칭은 조선에 주재하는 청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외교공관들과 조선의 외교 당국 사이에 왕복하는 문서들에서 국왕 고종을 칭하는 경칭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다. 비단 외교공관뿐만 아니라 관세 징수 기구인 海關 역시 이 호칭이 정부와의 왕복 문서에 등장하며,[76] 고종의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르젠드르

69) 『日案』 1, 682면, #1467.

70) 『德案』 1, 320면, #881.

71) 亞硏 編, 1969 『舊韓國外交文書』 19(法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86면, #194.

72) 다만 이 역시 우리 측에서 보낸 원본은 없고 러시아 측의 회신 내에 인용 형식으로 된 내용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俄案』 1, 69면, #131). 1891년 이후부터는 러시아에도 해당 호칭을 사용했음이 확인된다(『俄案』 1, 189면, #396).

73) 이러한 조선의 해당 정책 기조는 '萬壽聖節' 용어의 사용에서도 확인된다. 원래 제후국의 군주 생일에 해당되는 용어는 '千秋慶節'인데, 1888년의 생일 초대장에서는 '폐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황제국의 용어에 해당되는 '만수성절'을 사용했으며, 1889년부터는 '폐하'와 '만수성절'을 함께 사용하였다(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4-195면). 즉 이 용어의 사용 역시 단계적인 확장을 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4) 호칭의 사용 대상국이 확장된 첫해였던 1889년의 국왕 탄생일 초대 건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는 회신에서 같은 '대군주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영국만이 '폐하'라는 말을 빼고 회신하는데(『英案』 1, 341면, #631), 이후로는 영국 또한 조선 측의 해당 호칭 사용을 존중하여 같은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것이 확인된다.

75) 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5면.

(C.W.Legendre: 李善得) 또한 1892년에 일본에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해당 경칭을 사용함이 확인된다.[77]

이렇게 점차 조선에 주재하는 외국인 및 그들이 소속된 공관 등에서 조선 국왕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어간 '대군주폐하'는 급기야 1893년에는 관찬 연대기 사료인 『承政院日記』에도 등장하게 된다.

> 未時에 上이 咸和堂에 나아가 각국 공사를 召見하였다. 이때 入侍한 行都承旨 李容直과 假注書 朴經遠이 차례로 侍立하였다. 상이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남쪽을 향하여 交椅 앞에 섰다. …… (중략) …… 이어 사관에게 러시아 공사를 引接하도록 명하였다. 공사가 서쪽 계단을 통하여 당에 오른 다음 들어와 기둥 안에서 打恭禮를 행하니, 상이 손을 들어 答揖하였다. …… (중략) …… 공사가 아뢰기를, "오늘은 바로 설날입니다. **대군주폐하**께서 千秋萬歲토록 장수하시고 궁중 또한 안녕하기를 천만번 삼가 축원합니다." …… (중략) …… 이어 사관에게 영국 영사를 인접하도록 명하였다. …… (중략) …… 영사가 아뢰기를, "여기에 온 뒤로 다행히 **대군주폐하**께서 돌봐주고 염려해주시는 은덕을 입어 무사히 잘 있었습니다." …… (중략) …… 이어 아뢰기를, "오늘은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대군주폐하**께서 천추만세토록 장수하시고 東宮低下가 만수무강하고 궁중과 경내도 태평하기를 천만번 엎드려 축원합니다." …… (후략)[78]

---

76) 『總關去函』(奎17832) 제1책, 「閔種默 頓(1889. 8. 30)」; 『總關公文』(奎17830) 제3책, 「督辦統理交涉通商事務 閔(1889. 9. 24) → 總稅務司 墨賢理」. 이는 아마도 해관 稅務司가 외국인인 관계로 외교 관서와 비슷하게 인식했던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정부에서 해관에 발송한 문서에서 '대군주폐하' 표현을 쓰기 이전 시점에 해관에서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는 '大君主殿下'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더러 발견된다(『總關來申』(奎17829) 제2책, 「通政大夫戶曹參議銜管理海關事務總稅務司 墨賢理(1887. 12. 9)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등 참조).

77) 『李案』(奎17742) 제1책, 「具禮 頓(壬辰十月初三日)」·제2책, 「具禮 頓(壬辰十月初三日)」

78)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1월 1일, "未時上御咸和堂 各國公使召見入侍時 行都承旨李容直假注書朴經遠 以次侍立訖 上具翼善冠袞龍袍 南向立交椅前 …… (中略) …… 仍命史官 引接俄羅斯公使 公使自西階陞堂入楹內 行打恭禮 上擧手答揖 …… (中略) …… 公使曰 今日卽元朝也 **大君主陛下**千秋萬歲 宮中亦爲安寧 千萬顒祝矣 …… (中略) …… 仍命史官 引接英國領使 …… (中略) …… 領使曰 來此以後 幸荷**大君主陛下**眷念之德 無事善在矣 …… (中略) …… 仍奏曰 是日卽元正元日也 **大君主陛下**千秋萬歲 東宮邸下萬壽無疆 宮中京內 亦爲泰平 千萬伏祝矣 …… (後略)"

위의 인용문은 1893년 새해 첫날에 고종이 일본·러시아 공사와 영국 영사를 접견하는 광경을 묘사한 사료로, 청일전쟁 이전 '대군주폐하'라는 호칭이 명시된 유일한 관찬 연대기류의 기록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러시아 공사와 영국 영사가 고종을 지칭하며 했던 실제 경칭은 아마도 'your Majesty'나 그에 상당하는 말이었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대군주폐하'라는 말을 현장에서 실제 썼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그간 어디까지나 외교문서에만 사용되던 이 경칭이 국가 공식 관찬 사료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대군주폐하' 호칭이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범용성을 획득하자 조금 더 과감하게 공개적 사용을 시도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 호칭과 더불어 앞 장에서 언급했던 '짐'이나 '조칙' 등의 여타 황제국 용어 또한 외교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갔다. 특히 '勅諭'의 표현은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기까지 했으며,[79] 처음에는 사용을 주저했던 '짐' 역시 1886년 프랑스[80] 및 1892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의[81] 조약 체결 시에는 분명하게 쓰고 있다.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 당시 논의되었다는 조선의 稱帝 문제는[82] 바로 이러한 분위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극적인 반청자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3] 다만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반청자주인 만큼, 당연히 청에 대해서

79) 외교문서에 널리 사용됨은 물론이고, 해관과의 왕복 공문에서도 그 사용이 빈번하게 확인된다(『總關公文』 제2책, 「督辦統理交涉通商事務 趙(1888. 5. 25) → 總稅務司 墨」; 『總關來申』 제3책, 「嘉善大夫戶曹參判銜 管理海關事務總稅務司 墨賢理(1888. 5. 26)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總關去函』 제1책, 「函送 墨關(戊子年五月二十九日)」; 『總關來申』 제3책, 「嘉善大夫戶曹參判銜 管理海關事務總稅務司 墨賢理(1888. 6. 3)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總關公文』 제3책, 「署理督辦統理交涉通商事務 趙(1889. 5. 15) → 總稅務司 墨賢理」 등).

80) 『法案』 1, 35면, #88.

81) 『奧約議案』(奎23465) 「換約批文」, "(前略) ..... 朕御極之三十年 大朝鮮開國五百二年 卽中國光緖十九年 ..... (後略)"

8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機密 제71호, 1897년 10월 25일 「皇帝稱號ノ起因竝ニ其承認方ニ關スル意見上申」. 참고로 이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시 비준 문건에서도 '대군주폐하' 호칭이 발견된다(『奧約議案』 "敬啓者 欽奉我大君主陛下勅旨 .....(後略)").

83) 민회수, 앞의 논문, 180면.

는 '대군주폐하' 용어의 사용을 비롯한 일체의 시도가 비밀이었음은 물론이다.[84]

이렇게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여타 황제국의 격식 용어들과 함께 쓰이면서 서서히 그 사용이 확장되어 나가던 '대군주폐하'는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경복궁 점령 및 내정개혁 강요 등의 상황을 맞아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즉 이듬해인 1895년 1월 12일(음력 1894년 12월 17일)에 '主上殿下'를 '大君主陛下'로, '王大妃殿下'를 '王太后陛下로', '王妃殿下'를 '王后陛下'로, '王世子邸下'를 '王太子殿下'로, 그리고 '王世子嬪邸下'를 '王太子妃殿下'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내각 奏請에 따라 왕실의 호칭이 바뀌면서[85] '대군주폐하'는 비단 외국 사신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공식적인 호칭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측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단발령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일본 측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 '대군주폐하'라는 용어는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결코 아니며, '대군주'라는 명칭이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먼저 등장한 뒤, 양절체제의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뒤에 '폐하'를 붙이며 완성되어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사용해온 호칭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청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이 논의되는 상황과 맞물려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기까지의 역사의 진행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86]

---

84) 1889년 8월 17~18일에 각국 공관에 보낸 고종의 생일 축하연 관련 공문에서 '대군주폐하'로 표기된 부분이 같은 내용을 청에 대해 보낸 서한에서는 '國王殿下'로 표기되어 있다(亞硏 編, 1970『舊韓國外交文書』8(淸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582면, #999). 그리고 '만수성절'의 용어 또한 사용되지 않았다[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5-197면]. 이러한 소극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전략을 취한 탓에 적어도 1892년경까지는 이 사실이 청 측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그 해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屬邦照會 거부 사건 당시 李鴻章과 袁世凱가 조선의 중국 속방으로부터의 탈피를 염려하며 논의한 내용에서 '대군주폐하'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淸季中日韓關係史料』5, #1662, 2963a-b면·#1662-(3), 2966b-2967a면).

85)『高宗實錄』권32, 31년 12월 17일.

86) 갑오개혁기 및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황제국 격식 도입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쓰키아

## 5. 맺 음 말

이상에서 1894년 이전에 조선에서 군주에 대한 '대군주폐하'의 호칭과 사대질서하 황제국체제의 용어가 사용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처음 '황제' 호칭을 사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사대질서는 황제국과 제후국 사이에 황제와 국왕이라는 호칭 이외에도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짐', '폐하', '조', '칙' 등 엄격한 격식을 마련해 놓았다. 고려시대에는 외부적으로 제후국 체제에 따르면서 내부적으로 황제국체제를 지향하는 외왕내제 체제가 성립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도 제후국체제의 격식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 조선의 국왕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국왕'으로 호칭되었다.

개항 이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국왕에 대한 호칭으로 기존에는 호칭이 아니라 일반명사로 사용되던 '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영국이 청과 체결한 조약에서 황제-제후 관계와 무관한 명칭을 찾으면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후 영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군주' 앞에 '대'자가 추가되어 '대군주'라는 호칭이 탄생하였다. 이는 영국이 과거 중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격을 맞추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보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호칭이었다. 만국공법체제하의 국가 간 조약은 1대 1이 원칙이기에 영국과 격을 맞추기 위해 조선의 군주 또한 '대군주'로 표기되었고, 이후로 영국 이외의 여러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국왕 고종은 '대군주'로 지칭되어 이 명칭이 외교적으로 조선 국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서구의 군주국들이 중국과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사대질서에서는 황제국만 사용 가능한 '짐', '조', '칙' 등의 용어들을 이들 또한 쓰게 되었고, 역시 조선과의 조약 협상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조선도 격을 맞추기 위해 '칙', '칙유' 등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다만 처음에는 '짐'이나 '흠차' 등의 표현은 사용을 삼갔는데, 갑신정변 이

---

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앞의 책, 199-214면 참조.

후 일본에 사과 사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들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888년부터 '대군주' 뒤에 황제국 체제의 호칭인 '폐하'를 붙여 외국공관들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의 내정간섭이 점증하면서 조선이 그 극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주사절 파견과 더불어 외국의 인정에 기반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청에게 비밀로 하며 시행된 '소극적인 반청자주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먼저 미국·일본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다가 1889년부터 그 대상이 대부분의 외국 공관들로 확장된 이 '대군주폐하' 표현은 외국공관들과의 왕복 문서에서는 일상화되었고 해관에 대해서도 쓰였으며, 마침내 1893년에는 관찬 연대기류 사료에 등장하였다. 아울러 '짐'이나 '칙유' 등의 여타 황제국 용어·표현들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되어갔다. 그러던 중 1894년 이후 청·일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정세의 변동에 따라 청과의 관계 단절이 화두가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이 호칭이 전면으로 드러나 비단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공식적인 호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결국 '대군주폐하'라는 호칭은 사대질서와 만국공법체제의 조우 및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이 처한 '양절체제'라는 모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만들어지고 사용된 호칭이자 개념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밀하게 진행된 정책의 특성상 본고에는 불가피하게 추론적인 내용이 많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여러 국가들의 외교문서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발굴의 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이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투고일(2019. 11. 15), 심사일(2019. 11. 25), 게재확정일(2019. 12. 9)

# 참고문헌

## 1. 자료

『高麗史』.『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勉菴集』.
『李案』(奎17742).『總關來申』(奎17829).『總關公文』(奎17830).『總關去函』(奎17832).『奧約議案』(奎23465).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65,『舊韓國外交文書』1(日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70,『舊韓國外交文書』8(淸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7,『舊韓國外交文書』10(美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8,『舊韓國外交文書』13(英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6,『舊韓國外交文書』15(德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9,『舊韓國外交文書』17(俄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9,『舊韓國外交文書』19(法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2012,『近代韓國外交文書 제5권;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日本外交文書』『駐韓日本公使館記錄』『淸季中日韓關係史料』.
『咸豊條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659-11).
佐佐木正哉 編, 1964,『鴉片戰爭の硏究: 資料篇』, 近代中國硏究委員會.

## 2. 저서

김흥수, 2009,『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宋基豪, 1995,『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編輯部 編譯, 1991,『東洋史의 基礎知識』, 신서원.
쓰키아시 다쓰히코(최덕수 옮김), 2014,『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열린책들.
岡本隆司 編, 2014,『宗主權の世界史: 東西アジアの近代と翻譯槪念』, 名古屋大學出版會.

## 3. 논문

具仙姬, 1996,「갑신정변 직후 反淸政策과 청의 袁世凱 파견」,『史學硏究』51.
민회수, 2009,「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奎章閣』35.

박한민, 2019,「조선의 對日사절 파견과 대응양상의 변화(1876~1885) -흠차대신 파견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77.

유바다, 2017,「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효정, 2019,「19세기말 조선의 근대 외교질서 수용의 한 양상 -대일(對日) 사절단의 명칭과 사행원역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학논집』74.

이훈, 2009,「외교문서로 본 근세 한일간의 상호인식 -일본측 서계(書契)의 위식(違式)사례를 중심으로」,『일본학』28.

정동훈, 2019,「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專有)」,『역사와 현실』113.

崔鍾奭, 2015,「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震檀學報』125.

한철호, 2018,「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파견」,『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Abstract**

## The Use of the Terms for the Empire in Korea before 1894

Min Hoi Soo *

East Asian world order, also known as sadaejilseo(事大秩序), consisted of an empire(China) and its vassal states including Korea. In this order there were also some specific terms and appellations only for the emperor(皇帝; ruler of China), not allowed to the kings(王; vassals of the emperor) like Jim(朕; a self-appellation for the emperor), Chik(勅; the emperor's order), and Pyeha(陛下; meaning 'his Majesty' for the emperor). In the pre-modern age, Korea generally used the terms for the vassal state, not that of empire. And the appellation for Korean King was Guk-Wang(國王).

From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with U.S.A. in 1882, Korean King's appellation changed into 'Gunju(君主)' originally used as the common noun for a king, not the appellation. This had been originated from the treaty between U.K. and China in 1842, in which U.K. needed the appellation for the king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emperor and kings in the east Asian world order. The appellation of 'Daegunju(大君主; Great King)' appeared from the treaty between Korean and U.K. in 1883, inserting the prefix of 'Dae(大; big, great)' before 'Gunju', also initially used by U.K. from the treaty with China in 1860. This gradually took root as the appellation for the King Gojong among the foreign diplomatic corps in Korea. Along with the appellation, the terms like 'Jim' and 'Chik' also began to be used in the diplomatic materials for the western countries, because these ones had previously used the same terms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with China, the empire.

The appellation of 'Daegunju Pyeha(大君主陛下; His Majesty of Great King)', inserting

*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the suffix of ‘Pyeha’, only allowed for the emperor, at the end of ‘Daegunju’ began to be used in the diplomatic materials for the foreign countries excluding China from 1888. The use of this appellation seems to be a kind of the policy of passive resistance against Chinese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Korea, seeking self-reliance. Its use spread to almost all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s in Korea, along with extension of the use of ‘Jim’ and ‘勅’, and of course perfectly secret to China.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4~1895, as Chinese Power had been expelled from Korea, the appellation of ‘Daegunju Pyeha’ became used in public, outside the diplomatic materials.

**Key words** : Gunju(君主; King), Daegunju(大君主; Great King), Pyeha(陛下; His Majesty), Daegunju Pyeha(大君主陛下; His Majesty of Great King), Chik(勅; the emperor’s order), emperor(皇帝), self-reliance